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533
-----------	-----

2023년 3월 10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3년 2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

- 제316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(2023년 3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윤종장)

가. 제안이유

- 서민·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·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,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 “1,000만원 미만” → “2,000만원 미만”으로 확대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-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(안 제3조 제1항 제3호)
-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(안 제3조 제1항 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 제19~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2. 12. 8. ~ 2022. 12. 13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 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‘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·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,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’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규정

- 현행 「도시철도법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시행령 [별표 2]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·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1)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“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”으로 명시하고 있음

1)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」 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.

※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근거

「도시철도법」

제19조(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)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.

3.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

제20조(도시철도채권의 발행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21조(도시철도채권의 매입)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
2. 국가나 자치단체에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(建設都給契約)을 체결하는 자
4.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·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,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

제14조(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)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※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개요

- ▶ 발행목적: 도시철도 건설,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
- ▶ 발행근거: 도시철도법 제20조(도시철도채권의 발행)
- ▶ 발행대상: 자동차 등록(신규,이전),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총 16종
- ▶ 발행조건: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, 연이율 1.0%
- ▶ 발행규모: 연간 약 8,000억 내외

-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4조 [별표 2]의 요율(차량가액의 최대 20%)의 범위에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, 채권매입이후 만기 도래시(매입 이후 7년)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

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매도하는 상황도 다수 존재함

-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²⁾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도에 비해 6.69% 증가하였는 바, 민간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

※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³⁾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소비자 물가지수	98.799	99.382	100	102.10	106.69

■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 면제 조례개정안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‘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(2022.12.14.)’⁴⁾ 권고안에 따라 채권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사회초년생·소상공인 등의 공채매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① 자치단체

2) 가구에서 일상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

3) 출처: KOSIS(통계청, 서울시 소비자 물가조사)

4)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조요청(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4538호, 2022.11.29.)

와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대한 사항(안 제3조 제1항 제2호, 제3호)과 ②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민·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을 포함한 18개 자치단체5)에서는 2022년 1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기 반영 또는 반영예정임

※ 개정조례안에 따른 면제 대상

매입대상		매입금액의 범위	개정 前	개정 後
건설공사 도급계약				
	도시철도 건설공사	도급액의 100분의 5	-	-
	그 밖의 건설공사	도급액의 100분의 2		
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관련 용역·물품계약 (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 구입 물품의 경우 제외)		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	1,000만원 미만 면제	2,000만원 미만 면제
자동차 등록(소형6)				
비사업용 승용 자동차	신규등록			
	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)	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	-	면제 (‘25.12.31.까지)
	이전등록 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)	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	-	면제 (‘25.12.31.까지)

- 5) 광역자치단체(17)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/ 지방자치단체(1): 창원
- 6) 1. 규모별 세부기준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])

종류	소형	중형	대형
승용 자동차	배기량이 1,600cc 미만이고, 길이 4.7미터·너비 1.7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	배기량이 1,600cc 이상 2,000cc 미만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	배기량이 2,000cc 이상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

- 다만, 「도시철도법」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시행령 [별표 2]에 정한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“면제”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에 명시적으로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임
- 한편, 2022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규모는 391,900건, 7,560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 등록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발행 비율이 96.6%(378,556건)으로 가장 높고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공채 발행은 1.05%(4,105건)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-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2년 소형 자동차 등록건수와 계약 건수로 가정하여 도시철도공채 면제 규모를 추정할 경우 연간 약 835억원의 세입(차입)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채 매입액 감소분만큼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

※ 조례 개정시 면제 규모액(가정)

구 분	조례개정 前		조례개정 後		등록건수 (’22년도 기준으로 가정)
	채권매입액	할인매도 손실액	채권매입액	시민(사업자) 부담감소	
자동차 등록시 (신규)	1,679천원/대 (차량가액의 9%)	335천원/대 (할인율 20%)	면제	335천원/대 (할인율 20%)	42,452건 (소형차7)
용역계약 또는 물품계약	400,000원/건 (계약금액의 2%)	64,000원/건 (할인율 16%)	면제	64,000원/건 (할인율 16%)	4,150건 (계약건수)
총 액 ⁸⁾	83,537백만원	16,641백만원	83,537백만원	16,641백만원	

- 한편, 소형 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면제(2025년 12월 31일
까지)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대수
증가시 교통혼잡에 따른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
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
되며, 앞으로 면제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
안내를 시행하여 시민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
것임

7) 아반떼 모던 1,598cc, 가솔린 기준 2,143만원

8) 채권매입액=대당(건당) 매입액*등록건수 / 할인매도손실액=대당(건당) 할인매도액*등록건수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1,000만원”을 “2,0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·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.
4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것)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</p> <p>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(도급금액이 <u>1,000만원</u>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)</p> <p>매입 금액: 도급금액의 100분의 2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2,00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「<u>중소기업기본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·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4. <u>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 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것) 자동차의 신규 및</u></p>

② (생략)

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
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
의무를 면제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